

교훈 효도(孝道) 면학(勉學) 창의(創意)

# 가 정 통 신 문

남원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 전북 남원시 만인로 43

■ http://www.namwon.hs.kr ☎(063)630-7979(교무실)

☎(063)630-7965(인성부) ☎(063)630-7900(행정실)

FAX(063)632-7932

#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에 따른 비대면을 요구하는 많은 일상의 변화로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을 가정 통신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국면을 힘들지만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아동학대 우려가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와 가정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 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근거: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방임하는 행위
- 신고의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대상: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의 학부모
  - ※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자율적으로 실시, 의무사항은 아님
- ◉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아동중심의 양육(훈육)방법, 부모의 역할 등
- 교육방법: 입학(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 행사 활용, 가정통신문, 캠페인 활동 등
- 교육자료

구분	교육자료명		
교육부	-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https://www.youtube.com/watch?v=Z331D9hccwc)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41&m=0202028s=moe#)		
여성가족부	- 관련 동영상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6)		
아동권리보장원	- 관련 동영상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video)		
<b>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b> - 부모교육 과정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			

#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별 비교

구분	공공기관 소속직원	학생(아동)	학부모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관계부처 합동 대책
이수시간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자율
결과제출	0	0	Х

- 신고제도 내실화
- ▶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신고를 유도하고, 특히 가정방문 등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체제 강화

#### ● 신고의무자 신고 강화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신속 부과 추진
- 위탁가정 부모 및 약사를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하는 등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 ●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 익명신고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교육 매뉴얼에 포함하여 피해 최소화
  - ※ 아동학대신고앱(아이지킴이콜 112) 설치·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경찰 신변보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용
-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치료요양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등 조치
- 시설종사자의 적극 신고 유도
  - 아동인권보호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신고자 익명조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적극 안내
- 내부 신고자 불이익 금지법을 위반하는 시설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추진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심리·회복 지원 강화

- 심리치료 인프라 강화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 신규 설치 및 심리치료 전문가 등 배치
- 심리치료 종료 학생 대상 Wee클래스 및 센터 중심 후속 상담 실시
- 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연계 상담과 보호를 위해 가정형 Wee센터 신설·확대 추진
- 학교 상담기능 강화
- 전문상담교사 증원 및 상담역량 강화 추진
- 체계적 상담을 위해 학생상담법 제정 추진(2021년)
- ※ 학생상담법: 학생상담 지원체계, 상담기록 관리(본인의 상담기록, 삭제 권한 부여 포함),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의 근거 미련

# ☑ 아동학대 발생 가정 사후관리 등

-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강제력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교육 또는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추진 \*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 포함
-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지원 강화
- 학대행위자의 재 학대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사후지원 강화
- 원가족 복귀를 희망하는 위기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면접교섭 제공 ※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 확대(4개소 → 8개소)

2020년 10월 15일

남 원 고 등 학 교

